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70490 판결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박민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준홍, 한소영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91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해시로부터 C마을 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2차분 관로공사를 2016. 3. 2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1,249,127,000원, 공사기간 2016. 3. 25.부터 2018. 1. 20.까지,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10%”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2016. 11. 17.경부터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2017. 2. 7.경 계약해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 124,912,700원(계약금액 1,249,127,000원의 10%)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1) 계약이행보증이란 건설공사에서 수주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주자가 입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이는 계약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것인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이고, 위 하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이상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2) 원고의 위 주장은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 예정액에 해당하는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으로 설회할 여지는 있다(2022. 5. 18.자 참고서면에서 이를 밝히고 있다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13515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규정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없을뿐더러

첨부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갑 제3호증 5쪽) 제12조 제8항에서 ‘수급사업자가 계약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사업자는 보증기관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제12조 제9항에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이행보증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계약이행보증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허정룡

- 1) 다만 원고 대리인은 2022. 5. 18. 참고서면 3. 가.항에서 지급보증에 관한 조항을 적시하고 있는데,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계약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고, 계약이행보증은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입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
- 2)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20.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손해발생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주장·입증을 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후에서야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예정액이라는 취지만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고 손해액에 대한 석명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